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17251, 2021가단1763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윤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장규배, 나중헌

변 론 종 결 2022. 2. 8.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1. 이 사건 중 2021가단17251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21가단17633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1가단1725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7.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이 2021.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6,778,1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059,771원을 79,837,91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021가단17633: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법원이 2021.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6,778,1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059,771원을 79,837,91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D 등은 F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F와 D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962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20. ‘F,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49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9. 7. 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2019. 12. 12.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채권최고액 135,300,000원)도 2020. 4. 8. 같은 법원 H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중복)을 받았다. 한편 I 주식회사가 2019. 3. 12.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7,651,81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21. 6. 22. 피고 C에게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전부를 24,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8. 17. D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 2021가단17251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2021. 12. 16. D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1) 를 피고 C에 대한 배당이의로 변경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21. 8. 24. 열린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21,357,000원2) 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17,265,701원 중 135,163,621원을 주식회사 G의 승계인 J 유한회사에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82,102,080원을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30.65%, I 주식회사에 29.59%를 안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배당액 전액(36,778,14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1. 8. 26. 이 사건 중 2021가단17633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3)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소 중 배당이의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후소로 피고 C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전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전소 중 배당이의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3. 이 사건 전소 중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가. 피고 C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지나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 충족),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 충족)까지 아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소의 적법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증거에 의해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다. 위 인정사실, 을다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고 있고, D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운영은 중단된 상황이며, 동종 업체 및 주변 사업장에 따르면 미지급금 채무가 많아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현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18,443,600원에 불과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이보다 적은바, 원고는 가압류 신청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액을 파악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청구금액과 G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만 해도 약 275,795,790원인 사실, 원고는 D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I의 가압류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일인 2019. 12. 11. 무렵에는 D과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와 D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1. 8. 17.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전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후소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소제기의 방식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단순히 소송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이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D이 피고 B에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D과 그 가족에 대한 대여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한다.

2) 갑 8호증, 을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모친 K이 피고 B에게서 2017. 12. 15.부터 2019. 6. 23.까지 72,714,000원을 빌렸고, D이 피고 B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B이 그 후에도 2019. 12. 18.까지 K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055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055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참조).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K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B와 D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D이 아닌 K의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후소는 이유 없다.

판사 김수정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동)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2.38㎡

2층 31.98㎡

2. 토지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대 304㎡

- 1) 피고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B으로 보인다.
- 2) 감정평가액은 218,443,600원이다.
- 3) 위 각 소송이 2021. 10. 18. 병합되었다.